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S&S's Newsletter – 2019 년 08 월

고객사 및 독자분께,

S&S 회계법인의 2019년 08월 뉴스레터를 소개드립니다.

본 뉴스레터가 귀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Ben Nghe Ward,  
District 1, TP. HCM, Viet Nam

Tel: 84 (28) 39 104 996

Fax: 84 (28) 39 104 998

Web: <http://www.ssaudit.com>

#### Hanoi office:

7th Floor, Vinaconex 9 Building,  
Pham Hung St., Me Tri Ward, Tu Liem Dist,  
Hanoi, Viet Nam

Tel: 84 (24) 62 512 199

Fax: 84 (24) 62 512 201

유용한 정보가 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계법인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세무 및 세무행정

1.1 법인세 혜택에 대한 공문 번호 59212/CT-TTHT

1.2 우대지역 법인세 혜택 적용 회사의 인정 소득에 대한 공문 번호 3042/TCT-CS

1.3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적용에 대한 공문 번호 5755/CT-TTHT

1.4 주식 매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공문 번호 2245/CT-TTHT

1.5 전자인보이스 보관에 대한 공문 번호 12973/CT-TTHT

### 2. 투자

2.1 프로젝트 기간 만료 이후 절차에 대한 공문 번호 5859/BKHD-DTNN

2.2 납입자본금, 정관자본금의 실제 환율에 따른 VND 금액 재산정에 대한 공문 번호  
5587/BKHDT-DTNN

2.3 프로젝트 이행 계획 등록에 대한 공문 번호 5582/BKHDT-DTNN

### 3. 노동

3.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조건에 대한 공문 번호 646/CVL-QLLD

3.2 병가, 임신휴가 및 질병 회복 수당에 대한 공문 번호 1938/BHXH-CD

### 4. 기타

4.1 충당금에 대한 시행규칙 48/2019/TT-BTC

4.2 중고 기계, 장비, 생산라인용 설비의 내국수출에 대한 공문 번호 2395/BKH-CN-DTG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1.1 법인세 혜택에 대한 공문 번호 59212/CT-TTHT(2019.7.29)

세법에 대한 변경 시행령 12/2015/ND-CP – 제 1조 17항에 의거,

“17. 시행령 218/2013/ND-CP 제19조 제2절 점 dd에 다음 내용이 추가된다.

dd) 경제구역, 하이테크구역, 산업단지 및 지역에 따른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구역 이외에서 행해진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상품판매, 서비스 이익은 본 시행령 제4조 제1절 및 제3절,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법인세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회사가 경제구역, 하이테크 단지,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제 혜택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공단지역에서 투자프로젝트를 영위하는 가운데, 해당 투자 프로젝트에 귀속되지 않는 '유통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유통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문상 내용: ....Yahata 회사는 탄롱 산업단지, 동안구, 하노이시의 수출가공업관리부로부터 IC 를 발급받았고, 영업기간중 투자허가를 받은 해당 지역에서 상업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고, 그 활동이 Thanh long industrial park 와 연관되지 않은 경우, 해당 활동은 법인세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1.2 우대지역 법인세 혜택 적용 회사의 인정 소득에 대한 공문 번호 3042/TCT-CS (2019.8.2)

시행규칙 96/2015/TT-BTC 에 따라 우대지역 세금 혜택을 적용받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소득은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제조 행위 및 영업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일체에 대한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이전, 광물 개발, 소비세 부과 상품과 서비스, 부동산 양도로부터의 소득은 법인세 세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법인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자본의 증가 혹은 추가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 없이, 유통/무역 비즈니스 라인을 추가하는 경우 이로 인한 수입은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 1.3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적용에 대한 공문 번호 5755/CT-TTHT (2019.6.10)

시행규칙 111/2013/TT-BTC 의 제 1 조 제 1 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개인소득세 산정을 위해 거주자 조건 성립 여부를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183 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 거주자 조건이 성립하나 183 일 미만으로 거주하였을 경우 비거주자가 됩니다.

만약 외국인이 직전 연도 베트남에 183 일 미만 거주하였을 경우, 비거주자로서 20 %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외국인이 베트남을 떠나기 전 개인소득세 연말정산 의무는 면제됩니다.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1.4 주식 매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공문 번호 2245/CT-TTHT (2019.5.15)

해당공문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 시 주주가 법인인 경우, 자본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 및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 수입으로 분류되어 20 %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지분 양도 시 주주가 개인인 경우, 증권 양도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산정, 납부해야 합니다. 지분 양도에 따른 개인소득세는 [지분판매가의 0.1 %] 로 계산 /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매 분기마다 자본 양도 소득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매 연말 세금을 연말 정산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주주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는 요하지 아니합니다.

## 1.5 전자인보이스 보관에 대한 공문 번호 12973/CT-TTHT (2019.7.25)

빈증 세무국의 지침에 따르면 상품 판매 후 전자인보이스 발행 시 10 년 동안 PDF 와 XML 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XML 형식은 인보이스의 전체 데이터를 최초 발행 후 수정하지 않은 형태로 보관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PDF 형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XML 파일의 증거 파일로써 보관해야 합니다.

*\* XML 형식은 베트남 세무신고 소프트웨어로부터 추출한 파일의 형식입니다.*

## 2.1 프로젝트 기간 만료 이후 절차에 대한 공문 번호 5859/BKHD-DTNN (2019.8.21)

투자법 제 43 조에 따라 프로젝트 기간 만료 후 프로젝트를 연장하는 경우와 프로젝트 종료를 결정한 경우에 해당 절차는 아래와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 프로젝트 기간 만료 후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연장을 결정하였다면, 투자법 제 40 조와 시행령 118/2015/ND-CP 의 제 34 조에 따라 투자증명서 수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다만, 프로젝트 기간 만료 후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종료코자 하는 경우, 시행령 118/2015/ND-CP 의 제 41 조에 따른 적절한 프로젝트 종료 절차를 진행하고,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증명서를 반납을 진행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종료 절차 시 투자자는 청산 자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자산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정부로부터 토지를 불하받거나, 임대한 경우 혹은 토지 자산의 목적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 관한 처리를 토지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2.2 납입자본금, 정관자본금의 실제환율에 따른 VND 금액 재산정에 대한 공문 번호 5587/BKHDT-DTNN (2019.8.9)

시행규칙 16/2015/TT-BKHDT 의 부록 I.1, I.3, I.7 에 따르면 프로젝트 투자 허가서 양식 중 "자본금" 항목 결정 시 투자자는 해당 자본금의 VND 금액 및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있는 경우)를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 허가서 발급 시, "자본금" 항목에 대해 투자 사무소는 VND 와 이와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시행규칙 16/2015/TT-BKHDT 의 부록 II.1, II.2, II.3, II.4). - 즉, 외화는 '상등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VND 자본금과 이와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있는 경우)에 결정해야 하며, 투자자는 투자등록증에 따라 등록된 자본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외화 자본금 납입의 경우, 투자허가서상 VND 자본금 금액은 임의의 환율이 적용된 것이며 실제 자본금이 납입되는 시점의 적용환율(해당 은행 매입률)에 따른 VND 자본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자본금은 투자허가서상 VND 금액에 기준하여 납입되어야 하며 / 만약 VND 상등가가 낮게 납입된 경우에는 총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2.3 프로젝트 이행 계획 등록에 대한 공문 번호 5582/BKHDT-DTNN (2019.8.9)

시행령 118/2015/ND-CP 에 따라 베트남내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는 해당 시행령 제 29, 30, 31 조에 따른 투자허가서(IRC) 발급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때, 신규 설립법인은 ERC 발급일로부터 신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로 간주되며, 투자프로젝트 이행 시기 (IRC 상 기재됨)는 ERC 발급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상기 시행령 제 45 조 제 1 절)

## 3.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증 발급 조건에 대한 공문 번호 646/CVL-QLLD

시행령 11/2016/ND-CP 제 10 조 제 8 절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 대한 노동허가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노동허가서는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에 대한 노동에만 허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직시 신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위 시행령 제 10 조 제 1, 5, 6 절을 따르며 이전 노동허가서 원본 혹은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노동허가서 관련서식 참조: 시행규칙 40/2016/TT-BLDTBXH.

\*행정절차 참조: 결정문 602/QL-LDTBXH (2017.4.26)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3.2 병가, 출산수당 및 질병 회복 수당에 대한 공문 번호 1938/BHXH-CD

2019년 9월 1일부터 호치민시 내 설립된 기업이 전자망을 통하여 사회보험/의료보험카드 발급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병가수당, 출산수당 및 질병회복수당의 신청시 수혜자 목록을 사회보험국에 온라인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https://gddt.baohiemxahoi.gov.vn> 또는 IVAN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출)

전송할 자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병가/출산수당 수혜자 목록(토큰을 사용하여 전자서명함)
- 양식 01B-HSB 의 제출 이후 보험국이 요청하는 각종 서류의 하드카피 제출(출생증명서, 병원 퇴원서 등)하며 이때 C70a-HD 와 Form 201 을 같이 제출

## 4.1 총당금 관련 시행규칙 48/2019/TT-BTC (2019.8.8)

본 시행규칙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베트남법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총당금 설정이 불가”하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 설정한 해외투자 손실 총당금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연말간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환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재고자산 총당금의 경우, 회사는 미착상품/보세창고 보관상품등 회사 외부에 보관한 자산에 대해 총당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행규칙에서 추가 변경된 사항은 소유지분 및 투자자산 가치하락에 대한 총당금설정 수준(계산방식)이 이전과 변경된 부분입니다.

총당금 환입의 시점은 본 시행규칙에 따라 연간 재무제표 작성일자 (2019년)이며, 이는 구 시행규칙에서 연말 재무제표일자였던 것과 상이합니다. (구 시행규칙 228/2009/TT-BTC 제 3 조)

본 시행규칙은 2019년 10월부터 발효되며 2019년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228/2009/TT-BTC, 시행규칙 34/2011/TT-BTC 및 시행규칙 89/2013/TT-BTC) 및 기타 본 시행규칙과 내용이 상이한 규정을 대체합니다.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4.2 중고 기계, 장비, 생산라인용 설비의 내국수출에 대한 공문 번호 2395/BKH-CN-DTG (2019.8.8)

2019년 6월 15일부터 중고 기계, 장비 및 생산라인용 설비의 내국 수출은 결정문 18/2019/QD-TT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의 의견에 따르면 본 결정문 18/2019/QD-TTg은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처음 들여온 중고 기계, 장비, 및 생산라인용 설비에만 적용됩니다. 즉, 해당 결정문은 베트남 내 회사간 거래, 수출가공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가공기업이 베트남 국내 기업으로부터 중고 기계 및 장비를 구매할 경우 결정문 18/2019/QD-TTg이 규정하는 품질검사 규정 준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별도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